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8일, 이수진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 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전진숙의원안과 이수진의원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로서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자원봉사, 취재, 조사의 형태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이들 또한 현행법에서 지원대상자로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구조, 복구, 치료등의 현장대응업무 수행자처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들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향후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자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적 측면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